

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

| 번호 | 고려요소 | 배점항목 | 배점 | 특점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합 계 | | | 100 (105) | | |
| 가 | 경력 | 관련분야 자격 | 자격증 소지자 | 10 | * 관련분야 자격증,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|
| | | | 교육 이수자 | 5 | |
| | | | 해당없음 | 0 | |
| | | 관련분야 경력 | 7년 이상 | 25 | |
| | | | 5년 이상 | 20 | |
| | | | 3년 이상 | 15 | |
| 1년 이상 | 10 | | | | |
| 1년 미만 | 5 | | | | |
| 나 | 세대구성 (주민등록 등본 기준) |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| 10 | *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*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(노부모)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(손자녀)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(장애인) 참여신청자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④ (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) 민법 제 779조의 가족(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)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※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로 배점하며, 직계혈족의 배우자·배우자의 직계혈족·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| |
| | | 독거노인가구 | 8 | | |
| | | 노인부부가구(2명) | 5 | | |
| | |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등 | 0 | | |
| 다 | 공적 지원 수급 여부 | 기초연금 수급 | 소득인정액 '0원' | 20 | |
| | | | 소득인정액 '0원 초과' | 10 | |
| | | | 미수급 | 0 | |
| | | 60~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| 20 | | |
| 라 | 활동역량 | 참여 적극성 (책임감, 협동심, 참여 의욕 등) | 10 | | |
| | | 수행능력 (의사소통능력, 업무 이해력 등) | 10 | | |
| | | 신체활동능력 | 10 | | |
| 마 | 신규 참여자 | 신규참여자 | 5 | *2023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| |
| | | 해당없음 | 0 | | |
| 바 | 장애인 채용(가점) | 장애인 채용 | 5 | *증빙 서류: 장애인증명서, 복지 카드, 국가보훈 등록증 사본 등 수행기관 담당자 제출 | |
| | | 해당없음 | 0 | | |

* 수행능력과 신체활동 능력의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